

용인 드마크 데시앙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 2021.03.29.(월)일자로 공고한 '입주자 모집공고' 전문내용 일부 정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 당초 내용 : 37페이지

■ 학교배치 관련 유의사항

- 본 아파트 입주시점에 학교배정(초등학교는 용인초등학교 예정, 중학교는 용인1중학교 내 배정 가능) 등 교육정책은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학생배치여건 변화, 급당인원 변경 등에 따라 학생배치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정정 내용 : 37페이지

■ 학교배치 관련 유의사항

- 본 아파트 입주시점에 학교배정(초등학교는 용인초등학교 예정, 중학생은 용인1중학교 내 신설 학교가 설립되거나, 미설립될 경우 학생배치시설의 추가확보 후 배정 예정) 등 교육정책은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학생배치여건 변화, 급당인원 변경 등에 따라 학생배치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공급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309번지 일원

■ 공급대상 : 공동주택(아파트) 총1,308세대 중 일반분양 1,069세대 (전용면적 51㎡ 63세대, 59㎡ 767세대, 74㎡ 158세대, 84㎡ 81세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안내 사항

- 용인 드마크 데시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로 인하여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함께 운영되는 사이버 견본주택 홈페이지(<http://www.용인드마크데시앙.com>)를 통해 분양일정 및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견본주택 운영관련 안내

-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은 견본주택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온라인 예약제」로 세대별 방문 일시가 상이하오니 방문 전 용인 드마크 데시앙 홈페이지(<http://www.용인드마크데시앙.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입장인원이 제한되어 해당 일시 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2.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자세한 서류제출 사항은 용인 드마크 데시앙 고객센터(1577-0830)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전 열화상 카메라 또는 체온계 측정을 통한 체온은 37.3도가 넘을 경우

- 최근 1개월 이내 해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지역)에 체류한 경우

- 기타 사업주체 등이 요구한 사항에 불응할 경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통보 할 예정입니다.

- 용인 드마크 데시앙 고객센터(1577-0830)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리며, 청부자격 미숙지 및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부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는 청약콜센터(1644-7445) 및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3.29.(월)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용인시 처인구)은 「주택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투기과열지구 및 등법 제6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은 청약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1순위 청약 제한 대상 : ① 세대주가 아닌 자,

- ②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 ③ 2주택(부양권등 포함) 이상을 소유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1순위 접수 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세대주는 가점제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가점제/추첨제는 선택사항이 아닌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접수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주택형 85㎡ 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당첨된 주택의 구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 | |
|--|--------------|--------|----|--------|
|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 10년간 | | | |
|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 7년간 | | | |
| - 토지임대주택(제1항제5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제3조제2항제7호가목) | 5년간 | | | |
| -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제1항제2호), 분양전환공임대주택(제1항제4호), 기타당첨자(제3조제2항제1·2·4·6·8호) | 과밀억제권역 | 85㎡ 이하 | 5년 | 85㎡ 초과 |
| | | 85㎡ 초과 | 3년 | 85㎡ 이하 |
| | 그 외 | 85㎡ 초과 | 1년 | |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29.)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혼제자미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등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용인시 1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 청약이 가능한 “성년자”란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이거나 만19세 미만이나 혼인으로 성년 의제되는 자) 또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및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되,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용인시 처인구는 청약과열지역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에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재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피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의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1.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전혼자녀 등)

2.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분양권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인 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또는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 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的 범위 (국토교통부령 부칙 2018.12.11. 제565호 제3조)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단,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공시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을 말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으로 청약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등·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자족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단,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 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준소유주택을 처분하고,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원을 유지 및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국토교통부령 부칙 2018.12.11. 제565호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청약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 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방식

- ①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종류별로 입주자를 선정
- ② ①번에서 입주자 선정 후 남는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기관추천특별공급 예비자 포함)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③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3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
- ④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 세대가 있는 경우 일반공급 세대수로 전환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그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부금 포함)에 기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준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에게 공급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임대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페이지(<http://www.yeongindreamdeciang.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 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동법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므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의 수분양자는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방식, 거래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 등을 기재하여야 함)를 수분양자가 신고관청(용인시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하여 온라인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모두 수분양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신고관청의 요청에 따라 사업주체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대량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 등

- **전매 금지** : 본 아파트는 조정대상지역 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 2021.04.21.)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경우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3년으로 한다.[주택법 시행령 별표3])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재당첨 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향후 「주택법」 및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제6호, 같은 항 제7호 가목(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8호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재당첨 제한기간** :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조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당첨일부터 7년간 재당첨 제한

- **재당첨 대상자의 청약 제한** :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된 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함]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기간에 있는 분은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청약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순위 청약 자격 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당첨 제한**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자로 관리되오니, 당첨자 본인 및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당첨 제한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 적용)

- **전매금지, 재당첨제한, 1순위 청약 자격 제한 및 가점제 당첨 제한 등의 사항은 향후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자와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일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분양권 매수자가 피해를 보게 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밀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임의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19조 제4항에 의거 용인시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공급하며, 1순위 청약접수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접수일을 분리(해당/기타)하여 접수하오니 청약접수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부적격 처리,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 구 분 | 특별공급 | | 일반공급 | | | 당첨자발표 | 자격검증 서류제출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 | | 계약체결 | |
|-----|--|------|--|----------------|----------------|------------------------------------|--|--|------------------------------------|------|--|
| |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 1순위 | | 2순위 | | | | | | |
| | 해당지역 | 기타지역 | | | | | | | | | |
| 일 정 | 2021.04.12.(월) | | 2021.04.13.(화) | 2021.04.14.(수) | 2021.04.15.(목) | 2021.04.21.(수) | 2021.04.24.(토) ~ 2021.04.30.(금) | | 2021.05.03.(월) ~ 2021.05.07.(금) | | |
| 방 법 | 인터넷 청약(08:00 ~ 17:30) | | | | |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 견본주택 방문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방문예약제(홈페이지)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 | | | |
| 장 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견본주택(10:00~14:0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인 드마크 데시昂 아파트 견본주택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515-1번지 | | | |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 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02.19.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1. 공급규모 및 공급내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용인 드마크 데시昂 아파트 「용인시 도시재생과 - 2813호(2021.03.25.)」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309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3층, 지상 37층 8개동 총1,308세대 중 일반분양 1,06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기관추천 특별공급 106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06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213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32세대, 생애최초 특별공급 74세대 포함]
- 입주예정시기 : 2024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수)

| 주택 구분 | 주택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 | 약식 표기 | 주택공급면적(m ²) | | | 기타 공용면적 (자하주차장등) | 계약 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m ²) | 총공급 세대수 | 특별공급 세대수 | | | | | | 일반 공급 세대수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
|----------|------------|----|---------------|----------|-------------------------|---------|----------|------------------------|----------|----------------------------------|------------|----------|-----------|----------|-----------|----------|-----|-----------------|--------------------|
| | | |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소계 | | | | | 기관 추천 | 다자녀 가구 | 신혼 부부 | 노부모 부양 | 생애 최초 | 계 | | |
| 민영 주택 | 2021000153 | 01 | 051.9552A | 51A | 51.9552 | 26.3016 | 78.2568 | 34.9589 | 113.2157 | 23.4927 | 31 | 3 | 3 | 6 | 1 | 2 | 15 | 16 | 1 |
| | | 02 | 051.9512B | 51B | 51.9512 | 26.4233 | 78.3745 | 34.9562 | 113.3307 | 23.5280 | 32 | 3 | 3 | 6 | 1 | 2 | 15 | 17 | 1 |
| | | 03 | 059.9704A | 59A | 59.9704 | 25.5826 | 85.5530 | 40.3520 | 125.9050 | 25.6830 | 390 | 39 | 39 | 78 | 11 | 27 | 194 | 196 | 15 |
| | | 04 | 059.9579B | 59B | 59.9579 | 25.3705 | 85.3284 | 40.3435 | 125.6719 | 25.6156 | 377 | 37 | 37 | 75 | 11 | 26 | 186 | 191 | 12 |
| | | 05 | 074.9539 | 74 | 74.9539 | 29.7201 | 104.6740 | 50.4339 | 155.1079 | 31.4231 | 158 | 16 | 16 | 32 | 5 | 11 | 80 | 78 | 6 |
| | | 06 | 084.9636 | 84 | 84.9636 | 29.0132 | 113.9768 | 57.1690 | 171.1458 | 34.2158 | 81 | 8 | 8 | 16 | 3 | 6 | 41 | 40 | 5 |
| 합 계 | | | | | | | | | | | 1,069 | 106 | 106 | 213 | 32 | 74 | 531 | 538 | 40 |

■ 주택형 표시 안내

| | | | | | | |
|-------------------|-----------|-----------|-----------|-----------|----------|----------|
| 공고상(청약 시) 주택형 | 051.9552A | 051.9512B | 059.9704A | 059.9579B | 074.9539 | 084.9636 |
| 약식 표기(용인 드마크 데시昂) | 51A | 51B | 59A | 59B | 74 | 84 |

• 주택형의 표기는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나,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표기 방식(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되었으나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나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규모 표기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기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나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지상층 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 보안 및 설비관련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기타 지하층 면적입니다.
- 면적 및 대지지분은 준공 시 확정측량 등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의 경우도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음. 이 경우 이전고시 시점에 면적 확인 후 현금으로 정산하기로 함. 단, 증감되는 면적이 m²기준 소수점 이하의 경우에는 상호 정산하지 않음.
- 각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층·향·호별 구분 없이 청약 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여 호수가 배정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나,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2.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 주택형 | 공급 세대수 | 동 구분 (리)언 | 층 구분 | 하당 세대수 | 공급금액 | | | 계약금(10%) | 중도금(60%) | | | | | | 잔금(30%) | | |
|-----------|-----------|--|------|--|------|-------------|-------------|-------------|-------------|-------------|-------------|-------------|-------------|-------------|-------------|--|--|
| | | |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 1차(10%) | 2차(10%) | 3차(10%) | 4차(10%) | 5차(10%) | 6차(10%) | | | |
| | | | | | | | | | 2021.10.11. | 2022.02.10. | 2022.08.10. | 2023.01.10. | 2023.05.10. | 2023.10.10. | | | |
| 051.9552A | 31 | 104동(1호) | | 2층 | 1 | 89,034,000 | 161,766,000 | 250,800,000 | 25,080,000 | 25,080,000 | 25,080,000 | 25,080,000 | 25,080,000 | 25,080,000 | 75,240,000 | | |
| | | | | 3층 | 1 | 90,560,500 | 164,539,500 | 255,100,000 | 25,510,000 | 25,510,000 | 25,510,000 | 25,510,000 | 25,510,000 | 25,510,000 | 76,530,000 | | |
| | | | | 4층 | 1 | 92,122,500 | 167,377,500 | 259,500,000 | 25,950,000 | 25,950,000 | 25,950,000 | 25,950,000 | 25,950,000 | 25,950,000 | 77,850,000 | | |
| | | | | 5~10층 | 4 | 93,649,000 | 170,151,000 | 263,800,000 | 26,380,000 | 26,380,000 | 26,380,000 | 26,380,000 | 26,380,000 | 26,380,000 | 79,140,000 | | |
| | | | | 11~20층 | 10 | 95,211,000 | 172,989,000 | 268,200,000 | 26,820,000 | 26,820,000 | 26,820,000 | 26,820,000 | 26,820,000 | 26,820,000 | 80,460,000 | | |
| | | | | 21층 이상 | 14 | 96,737,500 | 175,762,500 | 272,500,000 | 27,250,000 | 27,250,000 | 27,250,000 | 27,250,000 | 27,250,000 | 27,250,000 | 81,750,000 | | |
| 051.9512B | 32 | 104동(2호) | | 2층 | 1 | 83,993,000 | 152,607,000 | 236,600,000 | 23,660,000 | 23,660,000 | 23,660,000 | 23,660,000 | 23,660,000 | 23,660,000 | 70,980,000 | | |
| | | | | 3층 | 1 | 85,555,000 | 155,445,000 | 241,000,000 | 24,100,000 | 24,100,000 | 24,100,000 | 24,100,000 | 24,100,000 | 24,100,000 | 72,300,000 | | |
| | | | | 4층 | 1 | 87,081,500 | 158,218,500 | 245,300,000 | 24,530,000 | 24,530,000 | 24,530,000 | 24,530,000 | 24,530,000 | 24,530,000 | 73,590,000 | | |
| | | | | 5~10층 | 4 | 88,643,500 | 161,056,500 | 249,700,000 | 24,970,000 | 24,970,000 | 24,970,000 | 24,970,000 | 24,970,000 | 24,970,000 | 74,910,000 | | |
| | | | | 11~20층 | 10 | 90,205,500 | 163,894,500 | 254,100,000 | 25,410,000 | 25,410,000 | 25,410,000 | 25,410,000 | 25,410,000 | 25,410,000 | 76,230,000 | | |
| | | | | 21층 이상 | 15 | 91,732,000 | 166,668,000 | 258,400,000 | 25,840,000 | 25,840,000 | 25,840,000 | 25,840,000 | 25,840,000 | 25,840,000 | 77,520,000 | | |
| 059.9704A | 390 | 101동(2호, 3호) 102동(2호, 3호) 103동(2호, 3호, 5호) 105동(3호, 5호) 106동(3호, 5호) 107동(3호, 5호) 108동(4호, 5호) | | 2층 | 15 | 104,086,000 | 189,114,000 | 293,200,000 | 29,320,000 | 29,320,000 | 29,320,000 | 29,320,000 | 29,320,000 | 29,320,000 | 87,960,000 | | |
| | | | | 3층 | 15 | 105,754,500 | 192,145,500 | 297,900,000 | 29,790,000 | 29,790,000 | 29,790,000 | 29,790,000 | 29,790,000 | 29,790,000 | 89,370,000 | | |
| | | | | 4층 | 15 | 107,458,500 | 195,241,500 | 302,700,000 | 30,270,000 | 30,270,000 | 30,270,000 | 30,270,000 | 30,270,000 | 30,270,000 | 90,810,000 | | |
| | | | | 5~10층 | 83 | 109,127,000 | 198,273,000 | 307,400,000 | 30,740,000 | 30,740,000 | 30,740,000 | 30,740,000 | 30,740,000 | 30,740,000 | 92,220,000 | | |
| | | | | 11~20층 | 126 | 110,831,000 | 201,369,000 | 312,200,000 | 31,220,000 | 31,220,000 | 31,220,000 | 31,220,000 | 31,220,000 | 31,220,000 | 93,660,000 | | |
| | | | | 21층 이상 | 136 | 112,535,000 | 204,465,000 | 317,000,000 | 31,700,000 | 31,700,000 | 31,700,000 | 31,700,000 | 31,700,000 | 31,700,000 | 95,100,000 | | |
| | | | | 101동(1호, 4호) 102동(1호, 4호) 103동(1호, 4호, 6호) 105동(4호) 106동(4호) 107동(4호) 108동(3호, 6호) | 12 | 98,193,000 | 178,407,000 | 276,600,000 | 27,660,000 | 27,660,000 | 27,660,000 | 27,660,000 | 27,660,000 | 27,660,000 | 82,980,000 | | |
| 059.9579B | 377 | | | 3층 | 12 | 99,861,500 | 181,438,500 | 281,300,000 | 28,130,000 | 28,130,000 | 28,130,000 | 28,130,000 | 28,130,000 | 28,130,000 | 84,390,000 | | |
| | | | | 4층 | 12 | 101,565,500 | 184,534,500 | 286,100,000 | 28,610,000 | 28,610,000 | 28,610,000 | 28,610,000 | 28,610,000 | 28,610,000 | 85,830,000 | | |
| | | | | 5~10층 | 69 | 103,234,000 | 187,566,000 | 290,800,000 | 29,080,000 | 29,080,000 | 29,080,000 | 29,080,000 | 29,080,000 | 29,080,000 | 87,240,000 | | |
| | | | | 11~20층 | 119 | 104,938,000 | 190,662,000 | 295,600,000 | 29,560,000 | 29,560,000 | 29,560,000 | 29,560,000 | 29,560,000 | 29,560,000 | 88,680,000 | | |
| | | | | 21층 이상 | 153 | 106,606,500 | 193,693,500 | 300,300,000 | 30,030,000 | 30,030,000 | 30,030,000 | 30,030,000 | 30,030,000 | 30,030,000 | 90,090,000 | | |
| | | | | 101동(5호, 6호) 102동(5호, 6호) 108동(1호, 2호) | 6 | 127,338,500 | 231,361,500 | 358,700,000 | 35,870,000 | 35,870,000 | 35,870,000 | 35,870,000 | 35,870,000 | 35,870,000 | 107,610,000 | | |
| 074.9539 | 158 | | | 3층 | 6 | 129,397,500 | 235,102,500 | 364,500,000 | 36,450,000 | 36,450,000 | 36,450,000 | 36,450,000 | 36,450,000 | 36,450,000 | 109,350,000 | | |
| | | | | 4층 | 6 | 131,456,500 | 238,843,500 | 370,300,000 | 37,030,000 | 37,030,000 | 37,030,000 | 37,030,000 | 37,030,000 | 37,030,000 | 111,090,000 | | |
| | | | | 5~10층 | 34 | 133,551,000 | 242,649,000 | 376,200,000 | 37,620,000 | 37,620,000 | 37,620,000 | 37,620,000 | 37,620,000 | 37,620,000 | 112,860,000 | | |
| | | | | 11~20층 | 48 | 135,610,000 | 246,390,000 | 382,000,000 | 38,200,000 | 38,200,000 | 38,200,000 | 38,200,000 | 38,200,000 | 38,200,000 | 114,600,000 | | |
| | | | | 21층 이상 | 58 | 137,669,000 | 250,131,000 | 387,800,000 | 38,780,000 | 38,780,000 | 38,780,000 | 38,780,000 | 38,780,000 | 38,780,000 | 116,340,000 | | |
| | | | | 105동(1호, 2호) 106동(1호, 2호) 107동(1호, 2호) | 5 | 140,473,500 | 255,226,500 | 395,700,000 | 39,570,000 | 39,570,000 | 39,570,000 | 39,570,000 | 39,570,000 | 39,570,000 | 118,710,000 | | |
| 084.9636 | 81 | | | 3층 | 6 | 142,710,000 | 259,290,000 | 402,000,000 | 40,200,000 | 40,200,000 | 40,200,000 | 40,200,000 | 40,200,000 | 40,200,000 | 120,600,000 | | |
| | | | | 4층 | 5 | 144,946,500 | 263,353,500 | 408,300,000 | 40,830,000 | 40,830,000 | 40,830,000 | 40,830,000 | 40,830,000 | 40,830,000 | 122,490,000 | | |
| | | | | 5~10층 | 35 | 147,218,500 | 267,481,500 | 414,700,000 | 41,470,000 | 41,470,000 | 41,470,000 | 41,470,000 | 41,470,000 | 41,470,000 | 124,410,000 | | |
| | | | | 11~20층 | 23 | 149,455,000 | 271,545,000 | 421,000,000 | 42,100,000 | 42,100,000 | 42,100,000 | 42,100,000 | 42,100,000 | 42,100,000 | 126,300,000 | | |
| | | | | 21층 이상 | 7 | 151,691,500 | 275,608,500 | 427,300,000 | 42,730,000 | 42,730,000 | 42,730,000 | 42,730,000 | 42,730,000 | 42,730,000 | 128,190,000 | | |

■ 공통사항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형별, 층별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및 취득세가 미 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 품목 미포함 금액이며,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 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 등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차 불출입)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로 납부 시에는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면, 별동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 중 50% 공정 시점 이후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기관의 중도금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나, 대출기관 미지정 또는 매수인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에 따른 공급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중도금대출기관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수분양자는 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취급기관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방문 및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합니다.
- 공부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양계약자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차이가 있을 경우 제작비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 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편집, 인쇄 과정상 착오 및 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으니 필히 청약 및 계약 전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 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 구 분 | | 51A | 51B | 59A | 59B | 74 | 84 | 합 계 |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 등 | 1 | 1 | 6 | 6 | 3 | 1 | 18 |
|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 | - | 5 | 5 | 2 | 1 | 14 |
|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 | 1 | 5 | 5 | 2 | 1 | 14 |
| | 중소기업 근로자 | - | - | 5 | 5 | 2 | 1 | 13 |
| | 장애인 | 경기도 | 1 | 1 | 7 | 6 | 3 | 20 |
| | | 서울시 | - | - | 6 | 5 | 2 | 14 |
| | | 인천시 | - | - | 5 | 5 | 2 | 13 |
| 계 | | 3 | 3 | 39 | 37 | 16 | 8 | 106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용인시 및 경기도 거주자(50%) | 2 | 2 | 20 | 19 | 8 | 4 | 55 |
|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50%) | 1 | 1 | 19 | 18 | 8 | 4 | 51 |
| | 계 | 3 | 3 | 39 | 37 | 16 | 8 | 106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6 | 6 | 78 | 75 | 32 | 16 | 213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1 | 1 | 11 | 11 | 5 | 3 | 32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2 | 2 | 27 | 26 | 11 | 6 | 74 |
| 합 계 | | 15 | 15 | 194 | 186 | 80 | 41 | 531 |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 특별공급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합계의 300%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특별공급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① 번에서 입주자 선정 후 남는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② 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 세대수의 300% 이내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 공급세대수로 전환합니다.
-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소형·저가 주택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종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 본인이 특별공급 간 종복신청 할 수 없으며 종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한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2. 특별공급 공통사항

| 구 분 | 내 용 |
|-----|-----|
|-----|-----|

| | |
|-------------------------|---|
|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요건, 청약자격 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 무주택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신청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해당 주택 임의공급 대상자로 선정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 선정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청약자격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기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기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기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기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기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m²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기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 분 | 용인시 및 경기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
| 전용면적 85m ² 이하 | 2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기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유의사항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는 특별공급 상호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척으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현장 신청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청약 신청자의 기재 사항만으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현장 접수 시 공급 유형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한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및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이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 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포함)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 제외)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면,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 가능)

3.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106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아래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입주자저축에 기입하여 청약통장 기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기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 및 도시재생부지 제공자 제외)]
- * 추천기관

| 추천기관 | 청약통장 구비여부 |
|---|------------------------|
| 장애인(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국가유공자 등(경기동부보훈지청) | 청약통장 필요없음 |
| 장기복무 제대군인(경기동부보훈지청), 종소기업 근로자(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국방부 국군복지단) | 입주자저축에 기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므로 사업주체 및 진산관리지정기관(한국부동산원)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106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미혼 자녀)이어야 하며,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 자녀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기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 여부 및 입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기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 또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릅니다.

■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 이전에 "3자녀 우선 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라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단, 경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용인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나머지 50%는 경기도거주 낙첨자 와 기타지역(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 평점요소 | 총 배점 | 배점기준 | | 비고 |
|--|------|--------------|----|--|
| | | 기준 | 점수 | |
| 계 | 100 | | | |
| 미성년 자녀수(1) | 40 | 5명 이상 | 40 | -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 | | 4명 | 35 | |
| | | 3명 | 30 | |
| 영유아 자녀수(2) | 15 | 3명 이상 | 15 | - 영유아(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
| | | 2명 | 10 | |
| | | 1명 | 5 | |
| 세대구성(3) | 5 | 3세대 이상 | 5 |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 | | 한부모 가족 | 5 | |
| 무주택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
| | | 5년 이상 10년 미만 | 15 | |
| | | 1년 이상 5년 미만 | 10 | |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 15 | 10년 이상 | 15 |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
| |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 | |
| | | 1년 이상 5년 미만 | 5 |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6) | 5 | 10년 이상 | 5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 | | | |
|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 | | |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
|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 | | |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 | | |

- * 공급신청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시 작성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오류,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민등록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5.8.)]에 따릅니다.

5.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213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고 혼인기간(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 재혼 포함)이 7년 이내(전배우자이었던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함)인 무주택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준소유주택을 처분하고,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원을 유지 및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 11.>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자축에 기입하여 청약통장 기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기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 여부 및 입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 책임은 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64호(2021.02.02.)]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 방법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소득기준을 원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준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2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용인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를 우선 공급하고,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용인시 1년 미만 거주자 포함)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②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③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 자녀수는 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직계비속은 포함하여 산정하되, 공급신청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 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 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 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공급유형 | 구분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이하 | 6,030,160원 | 7,094,205원 | 7,094,205원 | 7,521,048원 | 7,947,891원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이하 | 7,236,192원 | 8,513,046원 | 8,513,046원 | 9,025,258원 | 9,537,469원 |
|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초과~140%이하 | 6,030,161원~ 8,442,224원 | 7,094,206원~ 9,931,887원 | 7,094,206원~ 9,931,887원 | 7,521,049원~ 10,529,467원 | 7,947,892원~ 11,127,047원 |
|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초과~160%이하 | 7,236,193원~ 9,648,256원 | 8,513,047원~ 11,350,728원 | 8,513,047원~ 11,350,728원 | 9,025,259원~ 12,033,677원 | 9,537,470원~ 12,716,626원 |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세요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26,84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증·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6.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세대수의 3% 범위) 32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신청 주택형의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인 세대주)
-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1순위 청약 제한 대상자인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 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 미적용)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용인시 1년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 주민등록등·초본상 밀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릅니다.

7.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세대수의 7% 범위) 74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①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을 포함한다) 종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혼인 종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한다)가 있는 자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④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
-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 공급유형 | 구분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 | | | |
|--------------------------|-------------------|-----------------------------|----------------------------|----------------------------|----------------------------|-----------------------------|-----------------------------|
| | | 3인 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 130% 이하 | 7,839,208원 | 9,222,467원 | 9,222,467원 | 9,777,362원 | 10,332,258원 | 10,887,154원 |
|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 130% 초과 ~ 160% 이하 | 7,839,209원~ 9,648,256원 | 9,222,468원~ 11,350,728원 | 9,222,468원~ 11,350,728원 | 9,777,363원~ 12,033,677원 | 10,332,259원~ 12,716,626원 | 10,887,155원~ 13,399,574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26,84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

(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 휴직 등의 경우 소득산정방법
 -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 가입자 중 전년도에 휴직 등(파업 등의 이유로 실제 근무를 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으로 인해 소득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다른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의 소득을 추정하여 전년도 소득을 산정합니다.
 - ② 전년도 중 일부 기간만 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③ 전년도 전체에 걸쳐 휴직 등을 하고 해당 연도에 복직 등(정상적으로 근로에 종사하게 된 경우)을 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근로자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를 징구하여 월평균소득을 추정합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월평균소득의 추정이 불가능한 자는 본인의 재직증명서와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용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거주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65호(2021.02.02.)]에 따릅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 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1.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구 분 | 내 용 |
|----------------------|--|
| 청약자격 요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본 아파트는 청약과별지역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등·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등·호수를 결정합니다. • 동일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용인시 사업승인조건에 따라 (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용인시 1년 이상 계속 거주 청약자 우선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등·호수를 공개한 후 등·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등·호수를 배정합니다. (등·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 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접수방식 : 주택형별로 총, 동, 호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된 주택형에 대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습니다(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습니다) • 중복 청약 접수관련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면면 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당첨 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을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 부적격 당첨자의 청약제한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청약접수일 기준 청약신청자격 변경요건 관련
 - ① 청약예금의 신청주택규모를 작은 면적에서 큰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 해당 면적의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작은면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하위면적 모두 신청 가능하므로 변경 불필요)
 - ② 청약저축 가입자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총족되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약접수일 당일까지 : 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 간 예금금액 차액 발생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차액만큼 증액하여야 청약신청 가능합니다.(감액사유 시 변경 불필요)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 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 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 확인하여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 및 접수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 전원(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 및 '안내동영상'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 구분 | 거주구분 | 순위 | 주택형 | 신청자격 |
|-------|--|-----|---|---|
| 민영 주택 | [해당지역] 용인시(1년 이상) 거주자 / [기타지역] 용인시 (1년 미만) 거주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 1순위 | 전 주택형 · 85㎡ 이하 : 가점제: 75% 추첨제: 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는 가점제, 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됩니다. ①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에 속한 자 ②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추첨제 우선공급(무주택자 우선공급) 적용 : 1순위 추첨제 공급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 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 ②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준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에게 공급 ③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1순위 추첨제로 공급 신청할 때에는 기준 소유주택 처분 조건 승낙 여부를 선택하여야 합니다.(1분양권등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처분 조건 승낙이 불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면적별 신청 가능한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 : 청약저축가입자가 해약과 동시에 그 불입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지역별·면적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변경(전환)한 자 중 최초 가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모집공고일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면적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자 |
| | | 2순위 | 전 주택형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한 자 |

3.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 구 분 | 용인시 및 경기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
| 전용면적 85㎡ 이하 | 2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 전용면적 102㎡ 이하 | 3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 |
| 전용면적 135㎡ 이하 | 400만원 | 1,000만원 | 700만원 |
| 모든 면적 | 500만원 | 1,500만원 | 1,000만원 |

4.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 등 |
|---------|------|----------------------|----|-----------------|----|--|
| ① 무주택기간 | 32 |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 |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 |

| | | | | | | |
|--------------------|----|----------------|----|-----------------|----|--|
| ② 부양 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소본 ■ 주택("분양권등"을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만60세 이상 포함)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 불가. |
| | | 1명 | 10 | 5명 | 30 | |
|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 | | 3명 | 20 | - | - |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
| |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 |
| 총점 | 84 | | | | |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 | | | | |

5.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1

| 구 분 | 내용 |
|-----------------------------|---|
|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p> <p>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
|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p>*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3)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p>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에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IV 청약 신청 일정, 장소 등

1. 신청일정 및 장소

| 구 분 | 신청 대상자 | 신청 일시 | 신청 방법 | 신청 장소 |
|------|--------------------------------|---|----------------------------|---|
| 특별공급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2021.04.12.(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 |
| 일반공급 | 1순위 | 해당지역 | 2021.04.13.(화) 08:00~17:30 |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 | | 기타지역 | 2021.04.14.(수) 08:00~17:30 | |
| | 2순위 | 2021.04.15.(목) 08:00~17:30 |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미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해당순위 청약 신청일 08:00~17:30)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한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청약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네이버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전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 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 신청」 ⇒ 「APT 청약 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 시] 스마트폰 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 신청」 ⇒ 「APT 청약 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유통 경로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 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준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지원서)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상세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더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3.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 구 분 | 구비사항 | | |
|----------|---------------------------------|---|---|
| 일반 공급 | 본인 신청 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부금 포함) 통장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
| |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 사항 (배우자 포함)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서는 제출 생략)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 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밀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밀함) |
| | |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 |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 기준일 신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척도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자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일은 직원 입회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V |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일정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 구 분 | 신청대상자 |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
| 특별공급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21.04.21.(수) |
| 일반공급 | 1순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별조회 |
| | 2순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특별공급 등·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등·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려오니 척도로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등·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 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 신청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http://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金 은행 청약자) | |
|--------------|---|--|
| 이용기간 | 2021.04.21.(수) ~ 2021.04.30.(금) (10일간) | |
| 인터넷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
| 휴대폰 문자서비스 | 대상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
| | 제공일시 | 2021.04.21.(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 신청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등·호수 결정

| 구 분 | 선 정 방 법 |
|---|--|
|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특별공급, 디자인기구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자특별공급, 생애초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등·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등·호수를 결정합니다.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순번의 부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합니다.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 포함)는 당첨자 발표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등·호수를 공개한 후 등·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등·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등·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 포함) 당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자리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자리는 소멸된 때에는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주택형별 전체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등·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등·호수를 결정합니다.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 - 전용면적 85m²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는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의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 [추첨제 우선공급] | |
| <p>▣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 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p>*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1순위 추첨제로 공급 신청할 때에는 기존 소유주택 처분 조건 승낙 여부를 선택하여야 합니다.(1분양권등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처분 조건 승낙이 불가)</p> | |
| 유의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아파트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신청자가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 신청자 보다 우선합니다(용인시 1년 미만 거주 신청자는 1순위 기타로 청약 접수를 하여야 함.)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 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등·호수를 공개한 후 등·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등·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등·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 포함) 당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자리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자리는 소멸된 때에는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특별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같은 주택형의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증사자 등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등·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등·호와 미계약 등·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등·호와 미계약 등·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등·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등·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 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등·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VI |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1.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및 구비서류

■ 공통 안내사항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는 서류제출 기간[**2021.04.24.(토) ~ 04.30.(금)**] 내에 관련 서류를 필히 제출 해야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서류제출과 계약체결은 「온라인 예약제」로 진행될 예정이오니 당사 홈페이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 추첨 및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예정이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검증 서류제출 방문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첨자별 방문가능 일시가 상이하며, 용인 드마크 데시앙 홈페이지(<http://www.용인드마크데시앙.com>) 방문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동반자 입장 불가 /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1인만 입장 가능)
- 서류제출 장소 : 용인 드마크 데시앙 견본주택(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515-1번지)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2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세대구성원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청약자에 한하여 상기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표1>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구 분 | 서 류 유 형 | 해 당 서 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 | |
| 공통서류 | ○ | ①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 ○ | ②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 ③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

| | | | | |
|--------------------------------------|--|--|---------------------------------|--|
| | | | | 발급 |
| | | | | ④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 | | | |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⑥ 출입국 사실증명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 | | | | ⑥~1 출입국 사실증명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 | | | | ⑦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 | ⑧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 | | | | 해외 근무자 (단신 부임) ○ ①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불가능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 | | | | ○ ②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어려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불가 |
| · 가점제 당첨자 · 가점제 당첨 예비입주자 | | | | ○ ①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 |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
| | | | | ○ ③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 | ○ ④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 | | | ○ ⑤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 | | | | ○ 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 | | | | ○ ⑦ 출입국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 | | | | ○ ⑧ 출입국 사실증명 자녀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 | | | | ○ 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 | | ○ ②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 | | | | ○ ③ 신분증 대리인 • 위임인과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필요 |
| | | | |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 | | | ○ ①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 "소형·지구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사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 | | | ○ ②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 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표2>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생애최초)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구 분 | 서 류 유 형 | 해 당 서 류 | 발급기준 |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 | 필수 추가 (해당자) | | | |
| 특별공급 공통서류 | ○ ①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 |
| | ○ ②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 | ○ ③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 |
| | ○ ④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 | |
| | ○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 ○ ⑦ 출입국 사실증명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제외) | | | |
| | ○ ⑦ -1 출입국 사실증명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 | |
| | ○ ⑧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 | |
| | ○ ⑨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 | |

| | | | | |
|-------------------------|---|-------------------------------|------------------------|--|
| 해외 근무자 (단신 부임) | ○ | ① 해외체류 증빙서류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p>*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불가능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p> |
| | ○ | ②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 본인 및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권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p>*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90일, 연간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불가</p>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 | ① 주민등록표 초본 (전체 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까지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 ○ | ②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부모 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 ○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후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 | ○ | ④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자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계비속의 나이가 만 18세 이상 만 19세 이하일 경우 |
| | ○ | ⑤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p>*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만 가능)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p> |
| | ○ | ⑥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의 경우 |
| | ○ | ⑦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 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후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 | ○ | ③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p>*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만 가능)는 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p> |
| | ○ | ④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의 경우 |
| | ○ | ⑤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본인 (또는 배우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 | ○ | ⑥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⑦ 소득증빙 서류 (아래 <표3> 참고)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① 주민등록표초본 (전체 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p>*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p> |
| | ○ |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 | ○ | ③ 기타(가점 확인 서류) (<표1> 참고)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점 신청에 필요한 서류 - <표1>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중 가점제 당첨자 서류 참조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 | ①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 | ○ |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자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일 현재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 | ○ | ③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 ○ | ④ 소득증빙 서류 (<표3> 참고) |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 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
| | ○ | ⑤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표4> 참고)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4>의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통산 5개년도 서류 |
|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 | 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 | ○ | ② 위임장 | 본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 | ○ | ③ 신분증 | 대리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임인과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필요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표3>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사전서류 접수기간 내 제출)

| 해당자격 |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 근로자 | 일반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세무서 |
| | 금년도 신규취업자 | ① 재직증명서 | |

| | | | |
|------|---|--|------------------------|
| | 또는 금년도 전직자 |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 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 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② 해당 직장/세무서 |
| | 전년도 전직자 | ① 재직증명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 직장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 해당 직장 |
| 자영업자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 | 법인사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①, ② 세무서 ③ 등기소 |
| |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 | 세무서 |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①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기기차세 확정 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② 세무서 |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① 해당 직장/세무서 ② 해당 직장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
| |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근로계약서, 월별급여명세표 및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①번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① 해당 직장 ② 국민연금공단 |
| | 무직자 | ① 비사업자 확인인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이 아닌 경우) ②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견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표4>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 해당여부 | 서류구분 | 확인자격 | 증빙 제출서류 | 발급처 |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 입증서류 | 근로자 | ①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세무서 |
| | | 자영업자 |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및 해당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
| 5개년도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 근로자 |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1) 모집공고일 기준 연말정산하지 않은 전년도 소득세납부 증빙이 필요할 시 2)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년도 소득세납부 증빙이 필요할 시 |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
| | | 자영업자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신고자용),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2개서류 모두제출 | ① 세무서 |
| | 근로자 및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 5개년도 소득세납부 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2개서류 모두제출 ②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1) 모집공고일 기준 소득세 신고하지 않은 전년도 소득세납부 증빙이 필요할 시 2)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년도 소득세납부 증빙이 필요할 시 |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 체결 시 일정 및 구비서류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자정된 분양대금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자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구분 | 계약기간 | 계약장소 |
|-----------|---|------------------------------------|
| 당첨자 계약 체결 | 2021.05.03.(월) ~ 05.07.(금) (5일간 10:00 ~16:00까지) | · 당사 견본주택(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515-1번지) |

■ 공급금액(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구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
| 분양대금 납부계좌 | KB국민은행 | 671001 - 04 - 035809 | 우리자산신탁(주) |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밸코니화장 공사비 및 추가선택품목 (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 하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건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등·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홍길동 → '1011001홍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홍길동 → '1010201홍길동'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 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당사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 구 분 | 서류유형 | | 구비 서류 | 발급기준 | 확인 및 유의사항 |
|------------|------|-----|-----------------------|------|--|
| | 필수 | 해당자 | | | |
| 본인 계약 시 | ○ |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 본인 |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 ○ | | 적격 여부 확인 증빙 서류 | 본인 |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
| | ○ | |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 본인 |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 | ○ | |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 |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 인감증명서는 아파트 계약용으로 본인 발급용에 한함.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대리 계약 시 | ○ |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 | ○ | | 위임장 | 본인 |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 | ○ | | 신분증 | 대리인 | · 위임인과 수임인 모두의 신분증 확인필요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VII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관련 사항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3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2순위 당첨자 포함)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계약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게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최초 분양계약자가 기준주택 처분서약 미이행 및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분양계약이 취소될 경우 명의변경을 통하여 분양권을 매수한 양수인은 그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사업주체 등에게 이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 청약자격 전산수록한 자 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세대주기간, 부양가족 등) 등의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 신청일 이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록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보다 큰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터넷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2.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자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부적격 소명 대상자로서 사업주체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건본주택에 방문하여 “당첨사실 삭제 요청서(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 따라 아래 해당하는 경우 당첨자로 인정합니다.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므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주택의 계약자는 통법 시행령 제3조 제7항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자금방식, 거래대상 주택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 등을 기재하여야 함)를 수분양자가 신고관청(용인시청)에 직접제출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하여 온라인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모두 수분양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니며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3.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4.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기입하거나 기입한 분의 청약 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 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 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자와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의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5. 소형 · 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 및 별표1 제1항 가목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도권 1억 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등” 보유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등”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며, 주택 면적은 지분 비율만큼이 아니라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및 “분양권등”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的 범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부칙 제3조]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단,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주택 및 “분양권등” 처분 기준일(아래의 ①과 ②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분양권등”的 매매계약서
 -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그 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 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서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속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⑥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유주택자로 봄)
 -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60세 이상의 직계존속 포함)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
 - ⑦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나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멀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멀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⑧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신고를 밀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⑨ “소형 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일반공급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말함)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유주택으로 봄)
 - 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7.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대출 일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불과합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관계법령 및 정부정책에 따라 개인의 주택소유, 담보대출 유무, 중도금 대출 여부 및 주택의 공급 지역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액이 개인별로 상이하며, 개인별로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대출비율이 촉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거소 요건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대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 취급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 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로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일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하며, 변경된 입주지정일 최초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음을 인지한 것으로 봅니다.
-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공급계약 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중도금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미납 시 연체로가 부과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50% 범위 내에서 중도금 융자율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중도금 이자후불제는 중도금 1회차~중도금 5회차 이내로 자유롭게, 중도금 이자후불제 미적용 중도금(6회차 10% 등)에 대해서는 대출이 불가하오니 계약자 본인이 직접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정부정책 및 금융관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이자후불제)에 의거 계약금 원납(10%)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사업주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취급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로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시 중도금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원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을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취급 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대출취급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VIII | 발코니 확장공사 및 추가 선택품목

1. 발코니 확장 공사

■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구분 | 발코니 확장금액 | 계약금(10%) | | 잔 금(90%) |
|-----|------------|-----------|------------|----------|
| | | 계약 시 | 입주지정일 | |
| 51A | 34,900,000 | 3,490,000 | 31,410,000 | |
| 51B | 33,700,000 | 3,370,000 | 30,330,000 | |
| 59A | 45,100,000 | 4,510,000 | 40,590,000 | |
| 59B | 43,700,000 | 4,370,000 | 39,330,000 | |
| 74 | 48,200,000 | 4,820,000 | 43,380,000 | |
| 84 | 51,800,000 | 5,180,000 | 46,620,000 | |

■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 구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 고 |
|----------------|--------|----------------------|-----------|--|
|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 KB국민은행 | 671001 - 04 - 046218 | 우리자산신탁(주) | 입금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ex) 101동 101호 흥길동 → 1010101흥길동 |

-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 하셔야 합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표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1동 1001호 계약자 → '101001흥길동' / 101동 201호 계약자 → '1010201흥길동'
- 타인명의 등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납부일정 및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예정이며, 상기 계좌 또는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선택하여 계약하는 별도계약 품목으로 공동주택 분양기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준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확장 공사는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호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새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 시공 시 인·하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설계변경, 자재발주, 골조공사 등)의 문제로 계약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변경)계약이 불가능하며, 발코니 확장 계약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 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시양(유리, 창틀, 손잡이 모양)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미확장 시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호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세대는 미확장 발코니에 선호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됨)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호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인접세대(좌/우, 상/하부 세대 등)가 비확장일 경우 추가 단열공사를 위해 해당부위 벽 또는 천장이 들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및 슬리브 위치, 배선기구 위치, 조명기구 위치 등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셔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경우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를 미선택 시 유상옵션(추가옵션)은 신청이 불가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추가 선택 품목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품목 | 주택형 | 적용범위 | 에어컨 설치부위 | 설치대수 | 공급금액 | 계약금(10%) | | 잔금(90%) |
|-------------|----------|------|------------------|--------|-----------|----------|-----------|---------|
| | | | | | | 계약 시 | 입주지정일 | |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 51A, 51B | 선택1 | 거실, 안방 | 실내기 2대 | 3,100,000 | 310,000 | 2,790,000 | |
| | | 선택2 | 거실, 안방, 침실1 | 실내기 3대 | 4,300,000 | 430,000 | 3,870,000 | |
| | 59A, 59B | 선택1 | 거실, 안방 | 실내기 2대 | 3,100,000 | 310,000 | 2,790,000 | |
| | | 선택2 |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 실내기 4대 | 5,600,000 | 560,000 | 5,040,000 | |
| | 74 | 선택1 | 거실, 안방 | 실내기 2대 | 3,300,000 | 330,000 | 2,970,000 | |
| | | 선택2 |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 실내기 4대 | 6,000,000 | 600,000 | 5,400,000 | |
| | 84 | 선택1 | 거실, 안방 | 실내기 2대 | 3,500,000 | 350,000 | 3,150,000 | |
| | | 선택2 | 거실, 안방, 침실1, 침실2 | 실내기 4대 | 6,100,000 | 610,000 | 5,490,000 | |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관련 유의사항

- 상기 천장 카세트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하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상기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

- 상기 옵션 선택 시 냉매 배관 및 배수관이 천장속에 설치되어 시스템에어컨에 연결되므로, 별도의 배관 연결구가 시공되지 않으며,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시스템에어컨 옵션 금액은 매립 배관 비용을 차감하여 산정된 가격임)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설치시 실외기가 설치되는 구간에 노출배관이 설치되어 미관을 해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
-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의 출시, 시장상황의 변화 등으로 당초 계약모델들을 공급함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급이상의 타 모델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침실1(안방)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배관만 시공됨.
- 시스템에어컨 옵션선택시 거실/침실1(안방)의 냉매배관 및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음.

■ 가전 추가선택품목 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품목 | 주택형 | 업체명 | 모델명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
| | | | | | 계약 시 | 입주자정일 |
| 세프컬렉션 빌트인 냉장고 | 전체 탑업 | 삼성전자 | RB33R8798SR(L) | 3,700,000 | 370,000 | 3,330,000 |
| 음식물 분쇄기 | 전체 탑업 | 지비앤디 | GB-200 | 660,000 | 66,000 | 594,000 |

■ 가구 추가선택품목 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품목 | 주택형 | 공급금액 | 계약금(10%) | 잔금(90%) |
|---------------------------|-----|-----------|----------|-----------|
| | | | 계약 시 | 입주자정일 |
| 엔지니어드 스톤 (주방 상판·벽체 통합) | 51A | 3,100,000 | 310,000 | 2,790,000 |
| | 51B | 3,000,000 | 300,000 | 2,700,000 |
| | 59A | 3,100,000 | 310,000 | 2,790,000 |
| | 59B | 3,000,000 | 300,000 | 2,700,000 |
| | 74 | 3,600,000 | 360,000 | 3,240,000 |
| | 84 | 4,400,000 | 440,000 | 3,960,000 |
| 미세먼지 방충망 | 51A | 780,000 | 78,000 | 702,000 |
| | 51B | 650,000 | 65,000 | 585,000 |
| | 59A | 940,000 | 94,000 | 846,000 |
| | 59B | 810,000 | 81,000 | 729,000 |
| | 74 | 1,250,000 | 125,000 | 1,125,000 |
| | 84 | 1,140,000 | 114,000 | 1,026,000 |
| 안방 불박이장 | 51A | 1,700,000 | 170,000 | 1,530,000 |
| | 51B | 1,700,000 | 170,000 | 1,530,000 |
| | 59A | 1,800,000 | 180,000 | 1,620,000 |
| | 59B | 1,800,000 | 180,000 | 1,620,000 |
| | 74 | 1,900,000 | 190,000 | 1,710,000 |
| | 84 | 2,700,000 | 270,000 | 2,430,000 |

■ 추가선택품목 공통 유의사항

- 상기 유상옵션은 계약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중도금 납부 이후에는 유상옵션 공급 주체 및 시공사의 동의 없이 계약 해제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예정입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별도로 유상옵션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상기 유상옵션 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세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계약체결 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계약체결 전 분양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오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본 공동주택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 구분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 고 |
|-------------|--------|------------------|-----------|--|
|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 KB국민은행 | 671001-04-046218 | 우리자산신탁(주) | 입금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ex) 101동 101호 홍길동 → 1010101홍길동 |

3. 마이너스 옵션 품목

■ 공통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기구, 위생기기, 타일, 창호, 주방기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 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 신청 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 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적용 품목 및 범위

| 구분 | マイナー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マイ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
|--------|--|--|
| ① 문 | 목재문, 플라스틱문(문짝, 문틀, 상부덧판, 문선), 창호철물일체(도어록, 도어레버, 경첩 등), 디지털도어록 | 각설PL창호, 세대 현관방화문 및 도어록, 실외기실 방화문, 실외기 루버 |
| ② 바닥재 | 강마루, 타일, 갈라방이, 현관바닥재, 현관바닥판, 발코니 바닥타일(시멘트글로수 포함), 재료분리대 | 바닥난방, 시멘트블록(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
| ③ 벽 | 벽지(초베지 포함), 벽체마감(타일), 발코니 수전 | 석고보드마감, 단열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발코니벽 도장, GAS배관 |
| ④ 천장 | 천장지(초베지 포함), 등박스(우물천장 포함), 반자돌림(몰딩 포함), 전등밸브(간조대) | 천장틀 위 석고보드, 커튼박스, 발코니천장 도장, 소방시설, 전열교환 환기시스템 |
| ⑤ 욕실 |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비데 등), 수전류, 액세사리, 천장재(천장을 포함), 재료분리대, 젠다이, 샤워부스, 욕실장, 욕실휀, 욕실바닥 및 벽타일, 배수구 커버 | 조적, 방수, 미장, 전기, 설비, 배관/배선 |
| ⑥ 주방기구 | 주방가구 및 기구(상판 및 액세사리 포함), 벽타일, 수전류, 주방가전 일체(가스쿡탑, 음식물탈수기, 렌지후드, 주방액정TV 등) | 소방검사 관련 시설 및 주방 배기덕트 |
| ⑦ 일반가구 | 산발장 | - |
| ⑧ 조명기구 | 부착형, 노출형 조명등기구, 매입등기구 | 배선기구류(스위치 및 콘센트) |

* 상기 품목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하며, 상기 명시되지 않은 기본선택품목 등은 견본주택 내 기본설치 품목에 준함.

■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

| 구분 | 51A | 51B | 59A | 59B | 74 | 84 |
|----------------------|------------|------------|------------|------------|------------|------------|
| 기본선택 (마이너스 옵션 금액) | 20,257,381 | 19,202,245 | 23,496,065 | 22,410,733 | 28,147,575 | 30,715,116 |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세대는 발코니 확장공사 및 별도계약 품목 시공 신청이 불가합니다.(마이너스 옵션 신청 이후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발코니 배수 드레인 설치가 불가하므로 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에도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배선 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 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규정에 따른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법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부분 공사 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입주전 인수인계시 기시공된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의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동작오류 등의 하자는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사업부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변식의 칸막이 제거(변경)는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나,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 이후 미계약 세대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마이너스 옵션세대로 지정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견출, 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방기구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가능한 렌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하며, 자동소화장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마이너스 옵션 금액은 잔금에서 공제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 시 세대내 서비스 제공품목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IX 기타 계약자 안내

1.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2. 입주예정월 및 부대시설 안내

■ 입주예정월 : 2024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자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실제 잔금납부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중 선도래하는 날 이후에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일로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 1개소, 경비실 3개소, 근로자휴게실 1개소, 경로당 1개소, 어린이집 1개소, 작은도서관 1개소, 주민운동시설 3개소, 어린이놀이터 4개소, 주민공동시설 4개소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 사우나, 맘스카페 등), 키즈스테이션 1개소

3. 친환경 주택 성능 수준 등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 의무사항 | | 적용여부 |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
|----------------------------|--------------------------------------|---|---|
|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1호) | 단열조치 준수(가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
| | 버단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버단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
| | 방습층 설치(다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
|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따름 |
| |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름 |
| |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 적용 | 개별난방 사용 |
| |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적용 |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재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되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조금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
| | 고효율 난방, 금탕·급수펌프(마목) | 적용 | 난방, 금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
| | 절수형설비 설치(비목) | 적용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 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
|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3호) |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적용 |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
| |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적용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한 고효율 변압기 사용 |
| |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적용 | 전동기에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의 콘센서부설용량기준에 의한 역률개선용콘센서를 전동기별로 설치 |
| | 조명설치 설치(다목) | 적용 | 조명기기 중 안정기나장램프, 형광램프를 채택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유도등 및 주차장 조명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에 해당하는 LED 조명을 설치 |
| |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적용 | 거실, 침실, 주방에는 제2조 제9호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거실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 설치) |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적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녹색건축예비 인증,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

| 친환경건축물 예비 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 | | | | | | | | |
|--|--|----|----------|----------------------------|---|--------------|---------------|------------------|---------------|-------|--------------------------|
| <p>제 1 -616호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서</p> <p>대상건축물 : 용인8구역 새재빌리아파트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길왕장동 309번지 일대 부 문 : 광 동 주 택 인 증 기 간 : 2011년 12월 23일 ~ 사용검사일</p> <p>위 건축물은 「건축법」 제65조와 「친환경 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우수 친환경건축물(그린2등급)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2011년 12월 23일</p> <p>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p> <p>건축물의 건축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본인증에서는 인증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p> | <p>공동주택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p> <p>이 공동주택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0호·시·경·제부고시 제2009-329호)에 의해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p> <p>* 이 인증서는 2009년 12월 31일 고시된 인증기준으로 평가된 결과입니다. * 이 인증서를 각종 평가 및 기본 건축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종인증등급이 달라질 수 있음을 놓지 마십시오.</p> <table border="1"> <tr> <td>등급</td> <td>예비인증 1등급</td> </tr> <tr> <td>본 제 가 별 점 과</td> <td>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소요량 311.47 MJ/m²/년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발생량(난방) 17.48 kgCO₂ /m²/년 총에너지 절감율 43.06 %</td> </tr> <tr> <td>인 증 번호</td> <td>11-공-예-1-0047</td> </tr> <tr> <td>건 축 물 명</td> <td>용인8구역 새재빌리아파트</td> </tr> <tr> <td>소재지주소</td> <td>경기 용인시 처인구 길왕장동 309번지 일원</td> </tr> </table> <p>2011년 10월 31일</p> <p>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p> | 등급 | 예비인증 1등급 | 본 제 가 별 점 과 |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소요량 311.47 MJ/m ² /년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발생량(난방) 17.48 kgCO ₂ /m ² /년 총에너지 절감율 43.06 % | 인 증 번호 | 11-공-예-1-0047 | 건 축 물 명 | 용인8구역 새재빌리아파트 | 소재지주소 | 경기 용인시 처인구 길왕장동 309번지 일원 |
| 등급 | 예비인증 1등급 | | | | | | | | | | |
| 본 제 가 별 점 과 |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소요량 311.47 MJ/m ² /년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발생량(난방) 17.48 kgCO ₂ /m ² /년 총에너지 절감율 43.06 % | | | | | | | | | | |
| 인 증 번호 | 11-공-예-1-0047 | | | | | | | | | | |
| 건 축 물 명 | 용인8구역 새재빌리아파트 | | | | | | | | | | |
| 소재지주소 | 경기 용인시 처인구 길왕장동 309번지 일원 | | | | | | | | | | |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시공,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4.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주차장 차로 | 주차장 차로의 높이 |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
|----------|------------------------|-------------|
| 6.0~6.5M | 지하1,2층 2.3M, 지하3층 2.7M | 2.3M, 2.7M |

5.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금액

|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
| 제 01282021-101-0001900 호 | 240,060,100,000 원 |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주)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여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사고(보증여관 제4조)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체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체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체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여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체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체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분양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여관 제2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체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체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체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체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체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돋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을 하는 것으로 치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체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체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증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체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체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자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시양선택 품목(예시: 흡오토, 벌코니사시,マイ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미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체무자·공동사업주체·사업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체무자·공동사업주체·사업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체무자·공동사업주체·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체무자·공동사업주체·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벌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는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입주시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체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면밀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볼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함.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상세내용은 보증회사인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 바람(1566-9009)

6.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별도)

| 구 분 | 건축감리 | 전기감리 | 소방통신감리 |
|------|---------------|-------------|-------------|
| 회사명 |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주) | (주)지화기술단 | (주)재원엔지니어링 |
| 감리금액 | 2,749,019,000 | 761,393,000 | 690,000,000 |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7. 사업주체 현황

■ 사업주체 현황

| 구분 | 사업시행자 | 사업대행자 | 시공자 |
|--------|----------------------------------|------------------------------|---------------------------|
| 상 호 | 용인8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 (주)태영건설 |
|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헌터로 18, 2층 201호(유방동)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삼성동, 20층)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24(장항동) |
| 법인등록번호 | 134571-0005498 | 110111-2003236 | 110111-0155451 |

8.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 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함.

| 구 분 | 내진능력 (MMI 등급) |
|---------|---------------|
| 메르칼리 등급 | VII - 0.169 |

9. 관리형토지신탁

- 본 분양물건은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자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토지를 수탁받은 수탁자 「우리자산신탁(주)」 및 시공사 「(주)태영건설」 등 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 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본 조의 특약사항은 분양계약의 다른 일반조항보다 우선하며, 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1. 「본 사업은 위탁자인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을 사업시행자로, 수탁자인 「우리자산신탁(주)」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하여 진행하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우리자산신탁(주)」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신탁재산 중 현금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 2. 「분양대금수납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분양대금은 납부 효력이 없다.」
- 3.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보증책임(오시공, 미시공 및 사용승인 전 하자 포함)은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주)태영건설」이 부담하며, 수분양자는 「우리자산신탁(주)」에게 일체의 하자보증률을 청구할 수 없다.」
- 4.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은 위탁자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과 수탁자 「우리자산신탁(주)」 사이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에 따라 「우리자산신탁(주)」가 공급하는 것이며, 신탁해지 또는 신탁 목적 달성을 이유로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즉시 모든 공급계약에 대하여, 개별 공급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공급계약 대상 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료한 경우에는 그 즉시 해당 공급 계약에 대하여, 공급자이자 매도인으로서 수탁자 「우리자산신탁(주)」가 가지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하자 보수 등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기타 손해배상의무를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아니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승계)된다. 매수인은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대하여 수탁자 「우리자산신탁(주)」에게 의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5.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사업비 및 대출금의 상환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X 기타 유의사항

▣ 유의사항(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추후 미확인에 대한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공통사항

- 건축 인허가 이행여부에 따라 임시사용승인 및 동별준공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음.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함.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건축허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함.
- 현장여건, 구조, 성능 및 상품개선, 각종 인증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건본주택에 시공된 창호는 입찰결과에 따라 본공사시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형태(형별성능)가 등등 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음을 계약 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됨.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복건, 전염병 발생 등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없이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배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을 제출할 수 있음.
- 사업시행자, 사업대행자 및 시공사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거나 시공(설치) 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상태에서 성능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자에게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전향의 경우 입주 이후 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 시 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책임져야 함.
- 인허가 조건 변경, 시공성 개선 등을 위한 경미한 설계 변경 등 변경사항에 동의하여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음.
-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철자(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학교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청약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터넷이 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시행자, 사업대행자, 시공자에 즉시 서면(주민등록표등본 포함) 통보 바람.
- 보존 등기 및 이전 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음.
- 타사 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건축인허가도서(변경 허가 및 신고 포함)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 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 바람.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분양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척우 없으시기 바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비용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여야 함.
- 계약자는 공급대상의 분양과 관련하여 시공사에게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사업부지 내 지역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정압실 건축물 및 부지 제공에 대한 계약의 승계 의무가 입주민들에게 있음.
- 관련법규 및 시공, 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설계변경에 동의하여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외부여건

- 단지 내 도로 방향에 면한 세대의 경우에는 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으로 인한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음.
- 사전소을 영향성 평가에 따라 남측 고가도로방향에 방음벽(높이 약 14M)이 설치됨에 따라 해당세대 조망권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정비구역내에 시공되는 공원은 기부채납부지이며, 종교부지, 공공청사부지는 환자로 단지 내 소유시설물이 아니며,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또는 인허가에 따라 경사도 및 레벨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요구 등으로 위치 및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면적 및 대지지분은 준공 시 확정측량 등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의 경우도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음. 이 경우 이전고시 시점에 면적 확인 후 현금으로 정산하기로 함. 단, 증감되는 면적이 m기준 소수점 이하의 경우에는 상호 정산하지 않음.
- 각종 인쇄물 및 이미지, 모형 상에 표현된 주변환경, 부지고지자 등을 실제 시공 시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건폐율, 용적률, 주차대수 및 조경면적은 법적인 규정 내에서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의 등표시, 등번호, 외부색채, 그래픽, 조경, 외관, 옥탑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자문) 과정에서 입주 시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외부 난간 및 옥상 난간의 턱 높이,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및 공동부의 창호 사양, 위치, 크기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균린생활시설 등) 지붕옥상, 옥탑층 혹은 외부 벽면, 지상 일부구간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TV공청 및 위성안테나, 피뢰침, 측뢰피뢰침, 이동통신 중계기, 태양광설비, 실외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 세대에 진동 및 소음,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줄 수 있음.
- 목적물의 명칭 또는 지번은 계약 체결 이후 상표등록 여부 및 필지의 분할 또는 할팔에 의하여 홍보물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 관청의 이미지 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경관계획(야간 경관조명 포함) 및 색채계획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외관개선 또는 인허가 조건 상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및 일부 지붕 및 옥탑상부 등의 위치에 장식물 또는 구조물 등이 부착될 수 있음.
-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외관, 측벽,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디테일, 아파트 측벽 문양,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야간 조명 효과, 야간 시 차량 진출입, 주변도로의 차량통행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음.
- 각 동에 인접한 부분에 설치된 부대복리시설, 균린생활시설, 옥외시설물, 주차장진출입구 등의 이용에 따른 소음 및 차량불빛 등의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음.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 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음.
- 각 동의 외장부 벽에 입면의 디자인을 위한 들출부가 있을 수 있음.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인용된 사진, 일러스트(CG, 그림), 위치도, 조경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 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기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활용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으로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계변경 등을 통해 외부 입면디자인, 내부 레이아웃 및 실별 용도, 제공되는 가구 및 기기 등이 건축인허가도서(변경 허가 및 신고 포함) 및 홍보물의 내용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자정일(입주자사전점검일 등의 자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각 주택형별 적용되는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 제품품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 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축인허가도서(변경 허가 및 신고포함)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 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실제 시공은 인허가된 최종 건축인허가도서(변경 허가 및 신고포함) 기준으로 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광고 및 홍보유인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사항으로 예정상황을 표시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사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및 아파트 내 공동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이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휴게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 등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설치되는 커뮤니티 공간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 각 동의 배치는 법정거리로 준수하여 계획하였으나 동 배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일조권이나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 감소가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 및 대지는 균린생활시설 입주자(입점자)와 공동으로 사용함.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해당동의 이용상황에 따라 해당 세대에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 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각 동별, 세대별로 주차 위치를 지정하여 주차할 수 없음.
- 본 단지의 지하주차장은 지하층 특성 상 우기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별 지하주차장 여건에 따라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주차대수 최대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 및 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바닥줄눈은 공사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해당 부위 코킹은 시공하지 않음.
-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지하층 엘리베이터홀과의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는 각 주동에 따라 다름.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일부 벽면에 분전반이 설치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엘리베이터홀,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통행로 높이는 지하1,2층 2.3m, 지하3층 2.7m입니다.
- 지하주차장 지하1,2층 내 택배차량은 통행 불가합니다.
- 주출입구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균린생활시설 이용자와 공동으로 사용될 수 있음.
- 단지 내 CCTV설비는 방범기능 외 입주자 편의를 위한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 바랍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로 인하여 본 건물의 레벨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 될 수 있음.
- 단지 출입구, 주민공공시설의 위치 및 형태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배치 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음.
-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며 향후 위치 및 설치 대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재활용 창고, 쓰레기 접적소, 자전거 보관소, 설비환기구, 조경식재 및 시설물 등이 노출되어 저층 일부 세대의 경우 일조권 및 조망권 제한, 소음, 빛반사, 미관훼손, 냄새, 기타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시설 위치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변 단지의 신출,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석축 등의 동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부대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설비환기구, 근린 생활시설 등의 설치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 및 호별 계단 및 엘리베이터실의 배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는 동별 평면도를 확인하시기 바람.
- 주민운동시설, 쓰레기 접적소, 자전거 보관소, 설비환기구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경관조명, 영구배수시스템, 기타 시설물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따른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 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경관 조명 등에 의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주출입구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 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단지 내 자전거보관소는 주민의 통행과 비상 시 소방작업 등으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등의 사용에 대한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하여 견본주택에 비치한 건축도서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 보행 및 비상차량 통행로를 통하여 지하주차장 진입은 불가능하며 단지 내 도로(보행 및 비상차량 동선) 및 주차장 출입구 인접세대는 차량 이동 시 조명, 소음, 진동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 지반레벨 등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음.
- 각 동의 진입층 및 중앙광장 등 오픈 스페이스의 내부인, 외부인에 의한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 위치는 일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 시 당초 계획보다 등등 이상으로 시공됨), 관계 기관 심의 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소방관련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식재 및 차폐시설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수경시설에서는 녹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저해 및 악취가 날 수 있음.
- 단지 내 수경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정기 점검, 수질검사, 소독,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은 입주자가 부담.
- 캐노피 설치 부위 주변 세대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 도로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단지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시공되는 마감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조경시설물, 측면 로고설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부담해야 함.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 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람.
- 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됨.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세부시설은 변경될 수 있으며, 주민공동시설은 대표회의 구성 후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함.
- 주민공동시설에 운동시설(헬스장) 설치 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운영할 수 없음.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 시 제기한 기능으로 적용되고,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위치로 인해 일부 인접한 세대는 소음, 진동,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기본마감면 제공되고 집기류는 제외되며, 마감재 및 제품목록, 진출입 동선 계획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의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물의 냉난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에 소음 및 열기에 의한 사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구할 수 없음.(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아니함) 또한, 근린생활시설은 추후 건축 설계변경이 될 수 있으며, 세부용도, 층별구성, 입점업종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환기 시스템 등으로 일부 세대는 소음 및 열기 등에 의한 생활환경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입점시키는 아파트 입주 시기와 상이할 수 있음.
- 본 건축물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흘 공용부 창의 경우 모형과는 달리 미관개선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창호 형태 및 너비, 높이 등이 변경될 수도 있고, 창이 설치되지 않는 세대가 있으니 이 점에 대하여 동의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의 속도는 각 동 최고 층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의 대수, 인승, 승강로 위치 등은 허가도서 기준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 아파트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아파트 준공 전 공사용 운행 등 시험 운전을 거쳐 이관되며,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는 입주 시 인수인계 예정이며, 이사용으로 운행 중 인테리어 파손은 입주자 또는 원인 제공자(파손자) 책임 하에 있으며 시공사에 하자 제기를 할 수 없음.
- 시수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맨홀이 단지 주출입구 인근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수도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부대복리시설의 경우 지하층 등에 위치함에 따라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로 불리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비용은 부담임.
- 부대복리시설 등의 시설의 사용과 운영은 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관리비는 세대별 전용면적의 차이로 인해 차이가 날 수 있음.
-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이 지상에 설치될 수 있으므로, 일부 세대에서는 보일 수 있음.
- 공부상 주소 체계도 향후 관할관청의 기준에 따라 브랜드명이 표시되지 않고 마을 명칭만을 표시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구역 내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인허가도서(변경 허가 및 신고 포함)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을 표현되지 않음
- 실 대지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시행인가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등에 따라 견본주택, 단지배치, 단지 내 도로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등 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 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레벨변화에 따른 내부 경사로 및 옹벽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 옹벽 패턴 및 색채, 디자인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자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구역 내 공원 및 기반시설, 도로 등의 계획은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자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출입구 경비실 및 주차자단기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특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가로변 시설물이 신설, 추가되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남측 가로변으로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음

- 주동 저층부에는 마감재에 따라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외부에서 진입할 수 있는 보행자 통로는 인접 주민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상시 개방된 상태를 유지해야 함.(외부인 출입 가능)

◎ 설계관련 주요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통사항

- 일부 동에 경로당,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이 인접해 있으며, 설비 등 시설물 인한 소음 및 업종에 따른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견본주택 내 비치된 도면 및 모형 참조)
- 일부 동에 인접하여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설비 등 시설물로 인한 소음 및 업종에 따른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견본주택 내 비치된 도면 및 모형 참조)
- 단지 내부 공공장소인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휴게공간, 필로티, D/A(설비 환기구), 냉난방 실외기 환기구, 쓰레기 분리수거함, 외부계단 및 외부엘리베이터, 상가,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부 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영향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위치는 견본주택 내 비치된 도면 및 모형 등의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택배보관함 이용자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택배보관함 위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미술장식품 설치로 인하여 인접세대는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미술장식품 설치위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동 지하에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팬룸, 재연婶룸, 주민공동시설 보일러실 등 지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에 따른 사생활권이 영향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위치는 견본주택 내 비치된 도면 및 모형 등의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동 지하에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팬룸, 재연婶룸 등 지하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상부에 금배기구 인접세대는 소음, 냄새 및 해충에 의한 사생활 권, 조망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견본주택 내 비치된 도면 및 모형 등의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 필로티 및 층벽, 전면에는 제연 훈룸의 그릴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DA 위치, TOP LIGHT, 쓰레기 분리수거함, 자전거 보관대의 위치는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내 보도에 개보수와 도로시설물 및 지하매설을 설치가 상시 가능토록 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에는 해당서류 상시비치 하여야 함.
-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되며, 이는 입주민이 자치관리 하여야 함.
- 공항시설법에 의거 항공장애등이 설치됨.
- 근린생활시설은 상가 입주자가 실외기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소음 및 업종에 따른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동 지하층 계단실 진입 개구부에 바닥높이 차이로 인한 턱이 설치될 수 있음.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분양 후 단지 주변의 개발 및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인한 주변시설이 변경될 수 있음. 단지 주변 건물의 신축 및 증, 개축 등으로 조망권 및 일조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동의 배치는 법정거리를 준수하여 계획하였으나 동 배치에 따라 분양 받을 주택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각동별 주동 출입구는 동별 특성에 따라 디자인 및 높이, 폭, 동선 등이 상이하며 주동출입구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각동별 필로티의 사이즈 및 위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단지와 외부도로 사이의 경계 헌스는 행정관서의 지침등에 따라 재질이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최상층 세대의 경우 무동력 흡출기(무전원 고정식 흡출기)와 E/V 기계실에 균접해 있어 악취,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발전기실 인접동(102동, 103동 사이 지하3층)의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시험가동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동의 동출입구 및 저층동 3개층의 외벽마감은 지정석재로 마감될 예정(필로티 내부 및 일부구간 제외될 수 있음)재료의 색상 및 디자인은 시공중 변경될 수 있음. 외부마감에 따라 창호 프레임 및 실외기그릴 커러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각동별 석재와 페인트 적용 비율이 상이할 수 있고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주변도로, 단지 내 차로 및 비상차로, 주차장 출입구, 단지 출입구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각종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저층부 세대는 주차출입구, 부대시설, 가로등,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 등에 의해 소음, 조망 등 환경권 및 전조등에 의한 각종 환경권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각경관에 해당하는 조명, 경관계획은 관찰형의 규제사항에 저촉 또는 권리될 경우 계획이 변경 및 삭제될 수 있음.
- 각 동 저층세대의 경우 단지 내외 통로와 도로에서 세대 내부가 보일 수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식재, 각종 외부조명, 무선AP 및 홈네트워킹 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후 관리규약에 따름.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옥탑층에 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태양광 시설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외벽에(동별 위치 상이) 벽부형 사인물 및 피뢰침, 항공장애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의 미관저하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TV공청안테나 및 위성수신 안테나는 전파수신이 양호한 아파트 지붕(옥상)에 설치됨.
- 옥상에는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설치됨.
- 단지내 설치되는 휴게소, 부대복리시설, 수경시설, 소방도로, 재활용(쓰레기)보관소, 보행가로변에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침해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 디자인, 몰딩, 창틀 모양, 줄눈 등), 지하 출입구, 외부시설물(난간, 문주, 천장, 드라이에어리어(DA), 조경패턴 등)은 구조 및 심의, 디자인 의도에 의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음.
- 건물요철, 외벽몰딩, 장식물, 시설물, 조경 등에 의해 일부세대의 소음, 조망 및 일조가 침해될 수 있음.
- 입주시단지내도로,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난간재질, 입면장식물딩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시 제한이 있으므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음.
- 지하층 내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 사공됨.
- 108동 5,6호세대는 지하1층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홀로 진입시 커뮤니티시설을 거쳐 출입이 가능함.(지하1층 주차장에서 직접 출입 불가)
- 아파트 중간층에(동별위치 상이) 벽부형 피뢰침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의 미관저하가 있을 수 있음.
-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공용부의 창호(계단실, E/V홀 등)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지 않음.
- 아파트 지하층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 부족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어린이집, 놀이터 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도로 및 기반시설

- 단지 주변으로 도로가 인접하여, 이로 인한 단지 및 인접세대에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 일조/채광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 사업대행자, 시공자, 인허가청 등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 방향에 면한 세대의 경우 차량 및 일반인의 통행으로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음.
 - 사전소음 영향성 평가에 따라 사업자 남측 고가도로방향에 방음벽(높이 약 14M)이 설치됨에 따라 해당세대 조망권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 또는 인허가에 따라 도로 및 보도 등의 경사도, 단지레벨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자연단차 및 응벽구간 시공으로 저층부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남측 고가도로 방향으로 방음벽이 설치되어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분양홍보물(모형, 카탈로그, 각종광고지)**
- 각종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현황은 인허가 도면을 기준으로 표현하였음.
 - 모형 및 조감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외벽의 줄눈 형태 및 칼라는 실제와 다를 수 있음.
 - 분양홍보에 사용된 모형(단지모형, 세대모형, 주민공동시설모형 등)과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조경도, 주민공동 시설 및 단위세대 평면도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

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현장여건, 측량결과 및 각종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조경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현장운영 방침에 따라 일부 세대는 시공 개선 및 품질 관리를 위한 현장 내 견본 세대로 이용될 수 있음.
-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주택법 및 건축법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분양계약체결 시 변경 수락 동의서를 요청할 경우 수락해야 함.
-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밸코니 날개벽의 폭, 길이, 높이 등) 등의 디자인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아파트 외벽의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주차장 및 부대시설(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 경로당, 경비실)의 기초구조형식은 추가 지반조사 또는 굴토 후 지내력 시험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하주차장 내에 별개의 지하수 배수를 위한 영구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 할 수 있음.
-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하주차장 내에 별개의 지하수 배수를 위한 영구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 할 수 있음.
- 면적 및 대지지분은 준공 시 확정측량 등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의 경우도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동 될 수 있음.

■ 조경

- 단지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배기탑 등 구조물의 크기변경에 의해 조경면적 및 식재계획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에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을 제거되지 않고 존치 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미술작품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은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됨.

■ 경비실

- 경비실은 총 3개소 설치 예정이며, 일부 보행자 출입구의 경우 경비실이 설치되지 않으며, 실시공시 보안/안전상의 문제로 경비실이 추가 설치(이동식 또는 고정식)되거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시설물

- 훨棍, 배기탑, 발전기실 연도, 제연체룸 D.A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 일부가 공사 중 변경 될 수 있음.
- 각 동 출입구에 인접하여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며 저층 일부 세대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각 동별로 자전거보관소의 위치나 개수는 상이함.
- 단지내 공동주택용 쓰레기보관소가 8개소 설치될 예정(개소, 위치 및 규격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이며 일부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각동과 쓰레기(분리수거)장의 거리는 동별로 상이함.
- 각 동 지하2층에 제연체룸이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으며 지상층에 제연급기용 그릴이 설치 됨.
- 주동 주변 또는 주동과 접하여 쓰레기 보관소, 드라이어어리어(DA), 자전거보관대등이 설치되어 미관저해,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바람 등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음.

■ 주차장

- 당 단지에는 총 2개소의 주차장 차량 출입구가 있으며 출입구와 인접한 동의 경우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및 야간 시 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 주차장은 지하3층~지하1층까지 3개층으로 계획되어 있음
- 지하주차장 통행로 높이는 지하1,2층 2.3m, 지하3층 2.7m이며, 지하주차장 지하1,2층 내 택배차량은 통행 불가함.
- 지하주차장 주차구간 높이는 2.1M임
-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 공사 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디자인,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지하3층 주차장은 택배차량이 진입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일부 결로수를 위한 공간이며 상시 물이 흐르는 공간이 아니므로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 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아파트 지하층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애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배선 및 배관, 환기장치(유도펜)가 노출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및 주민공동시설 일부는 지하층에 설치되어 있음. 각 동별 이용상의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일부 동에 경로당,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이 인접해 있으며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단지는 임대주택을 포함하고 있으며, 단지 내 건립되는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등),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분양구분(조합원·일반·임대 등)에 관계없이 전체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함.
- 주민공동시설 일체의 운영 및 유지관리는 입주민이 자치적으로 하여야 함.
- 주민공동시설에는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음.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경로당/어린이집/관리사무소 등의 육상 및 주변에는 에어컨설치기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인접한 저층 세대에 조망권 침해 및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각종홍보물(분양카탈로그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 본 공사 시 내,외부 디자인과 용도, 규모,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북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추후 상가 분양 이후 평면,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동별 유의사항

| | |
|------|--|
| 101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동측에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동측에 경로당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서측에 주민운동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앞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지하에 인접하여 근린생활시설 기계실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1층 필로티로 인해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외 남측 고가도로에 따른 빛,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외 남측 공원으로 인한 빛,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107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측에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북동측에 데일리가든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서측에 데일리가든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동측에 육생비오톱, 보행자 출입구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 지하에 인접하여 기계실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 1층 필로티로 인해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 1층에 인접하여 주차장 훈룸 D.A가 설치되어 작동시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 1층에 인접하여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위치하여 빛,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부에 맘스카페, 관리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외 남측에 방음벽 설치로 인해 세대 조망에 간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외 남측 고가도로에 따른 빛,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외 남측 공원으로 인한 빛,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108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측에 어린이놀이터가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북동측에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측에 공공청사, 공원, 종교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서측에 외부 계단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동측에 데일리가든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 1층 필로티로 인해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 1층에 인접하여 주차장 훈룸 D.A가 설치되어 작동시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 1층에 인접하여 쓰레기분리수거장이 위치하여 빛, 소음 등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부에 작은도서관이 위치하고 있어 빛,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외 남측에 방음벽 설치로 인해 세대 조망에 간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외 남측 고가도로에 따른 빛,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외 남동측 공원으로 인한 빛, 소음 등의 환경영향과 프라이버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공통사항

- 단위세대의 천장고는 2,300mm이며, 거실 우물천장 천장고는 2,400mm임.
- 본 아파트는 각 세대별 가스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이 시공됨.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호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들은 입주자들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주택의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형, 동호수 등에 따라 각 시설별 공간의 크기, 창호의 크기 등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람.
- 각 세대 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 소음 등)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고, 공동주택의 특성 상 향후 층간/세대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 보수 대상이 되지 않음.
- 일부 세대는 공사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주방가구, 불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諾출면(후면, 하부, 천장 등)에는 마루, 타일, 석재,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평면구조 상 동일한 주택형이더라도 호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다르게 좌우대칭형 평면이 될 수 있고, 세대별로 각 실의 조망 및 방향이 상이하오니 청약 및 분양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벽/바닥 및 발코니 바닥의 타일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주방 상판, 주방 벽의 천연가공석의 줄눈이 있으며 나누기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타일 및 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판드,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스위치, 콘센트,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옵션 평면 선택 등의 사유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다용도실, 실외기실, 욕실, 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음.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불박이장,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본 공사 시 각종 유리도어(슬라이딩, 여닫이, 팍스 등)의 디테일은 변경될 수 있음.
-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재특성(은 성분) 상 산성, 알カリ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바 욕실 환기 및 유지 관리에 유의해야 함.
- 본 공사 시 세대 내 욕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조와 천장 내 설비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세대 내 욕실 단자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의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므로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음.
- 실외기 설치 세대 여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천장형 에어컨은 추가 선택 품목으로 제공되며 미선택 시 전 타입에 냉매배관 2개소 [거실 (스탠드형 기준 1개소)], [안방 (벽걸이형 기준 1개소)]가 제공되며, 천장형 에어컨을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은 설치되지 않음.
- 실외기 설치 세대 여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실외기실 도어의 개폐방향은 견본주택 및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 실외기실 설치공간의 크기는 단위세대 타입별로 차이가 있으며, 본공사 시 장비배치 등을 고려하여 견본주택 및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 보일러가 설치되는 다용도실 또는 창고, 수전이 있는 발코니, 실외기실 등을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
- 스프링클러 및 환기구(급/배기용)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견본주택 가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본 공사 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 기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 시 대피를 위한 시설이므로 대피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적치할 수 없습니다.
- 평상시 하향식 피난구 덮개를 밟거나 덮개 위로 물이 넘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하향식 피난구 열림이 원활하도록 실외기실 문은 항상 닫힘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바닥재별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방 발코니 및 주방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가스배관관경, 인입경로(위치) 등은 도시가스 공급 측과 협의로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마루 자재 및 석재는 자재의 특성 상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색상 및 무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거실 아트월의 패턴이 규칙적이지 않고 불규칙하게 설치되어 색상, 줄눈나누기 및 간격이 다소 다를 수 있음.
- 현관바닥 및 디딤판/걸레받이, 욕실 젠다이, 주방 상판 및 벽체 등에 사용된 자재는 자재의 특성 상 색상과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색상 및 베인이 다를 수 있음.

- 자재 특성 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패턴, 색상, 베인이 상이할 수 있음.
- 마감자재의 품질 상 하자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하여 시공 상 요청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일반가구/주방가구 등 마감재의 치수 및 색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당초 색상,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음.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주방벽, 아트월 등)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폭이 줄어들 수 있음.
- 가구배치 및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밸코니 비화장 시 확장 세대와 상이함.
- 본 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간접부분의 가구 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음.
- 본 공사 시 코킹 시공 부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밸코니 외벽, 측벽, 세대간 벽은 밸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축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세대 및 동일 세대 내 각 부위별 확장여부(상하좌우)에 따라 단열재 설치로 인한 벽체 돌출 및 실사용 면적이 감소될 수 있음.
- 상부 세대가 밸코니 비화장형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의 폭, 깊이가 축소될 수 있음.
- 커튼박스의 깊이는 배관 설치 등에 따라 커튼박스의 깊이가 변경될 수 있음.
- 가전기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의 용량, 크기에 따라 일부 제품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세대 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아파트)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은 내풍압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창호 및 난간의 형태, 분할, 재료, 색상, 개폐방향 크기, 위치 등을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실내 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밸코니 새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장치가 설치되며 렌지후드 뒤틀 커버 사이즈 및 상부장 수납공간은 변경될 수 있음.
- 옥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침경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우오수 배관, 바닥드레인 및 수전의 위치 및 개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밸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일부 세대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악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음.
- 승강기, 기계실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엘리베이터에 면한 단위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이 발생될 수 있음.
- 같은 주택형이라도 각 동별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고 청약 및 계약 전 비치된 건축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 실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음.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밸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밸코니 새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 시공시 인·허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문 및 창의 위치는 시공과정에서 이동, 변경 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싱크대하부 온수분배기에 연결된 노출 온수파이프는 보온시공을 하지 않음.
- 세대복도 및 천장의 마감치수는 현장 시공 시 벽체 및 천장마감으로 인하여 인허가 도면보다 안목치수가 줄어들 수 있음.
- 각 세대 내 환기 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럭트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화기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침실)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세대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 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세대 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건축(변경) 허가도서에 준해서 설치될 예정이며, 성능 개선을 위하여 위치 및 개소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침실 벽면에 세대분전함, 통신단자함이 설치되며, 설치위치는 주택형별에 따라 악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람.
- 각 세대의 콘센트, 스위치, 조명, 통신단자함, 분전함, 홈네트워크 월패드 등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분전함 및 통신단자함은 세대 벽체(침실)에 커버가 돌출된 형태로 노출되어 설치되며, 미관저해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사 시 천장들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별 급배기를 통하여 환기를 위하여 세대화기장치가 다용도실 또는 실외기실 상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천장마감 없이 노출된 형태로 설치될 예정으로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음.
- 세대의 밸코니, 가구내부 등 실내 벽면에 PD내 기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음.
- 밸코니/옥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음.
- 상부 세대 비화장시 하부 세대 천장 부위의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거실 우물천장 깊이, 폭, 커튼박스 깊이, 등기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우물천장에 단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음.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및 공용부위의 창호는 재질, 규격 및 사양, 레비형태,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 창호 외부에 설치된 유리난간 파손 우려로 이사시 사다리차 사용이 불가합니다.
- 옥상 배수를 위해 안방 밸코니, 다용도실, 실외기실 등에 우수선홀통이 설치될 수 있음.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시행령 제35조 별표3에 의거 사용승인 후 개별세대 밸코니 확장공사시 해당동 입주민의 2/3이상 등의 및 해당 지자체에 공동주택 행위허가를 득하고 준공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단위세대는 밸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기본형(비화장)선택 시 일부실의 사용이 불편할 수 있으며, 별도의 외부새사가 설치되지 않음.(외부새사 미설치로 인한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거실 및 침실 등의 천정고는 2.3M이며, 실시공시 바닥재의 종류에 따라 법정 허용한도내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부가구(복도장, 주방가구, 불박이장, 수납가구 등)설치 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 네트워크, 세대 분전함,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코어 형태에 따라 일부 세대는 엘리베이터 작동에 따른 진동 및 소음이 전달될 수 있음.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음.
- 옵션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주방상판 가스배관 타공 등)의 종류 및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밸코니에는 선홀통 및 배수구가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수전이 설치되지 않은 밸코니는 물청소를 위한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본 아파트는 개별난방 방식으로 다용도실에 보일러가 설치됨
- 동절기 보일러 연도의 걸로로 인해 낙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절기 결로낙수와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현관, 안방밸코니, 대피공간 및 주방밸코니의 경우 비난방공간 임.(욕실은 육조, 샤워부스, 양변기, 세면기 공간을 제외하고, 출입문 주변에 바닥 난방 설치)
- 일부 세대에 공동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각설 밸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전기 품목(콘센트, 조명기구)의 사양 및 설치위치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 저층부 세대는(1~3층) 세탁실 밸코니 입상배관이 두개 이상 더 시공됨. (저층용 배관 및 통기관)
- 자연환기구사양은 추후 업체선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일반 냉장고 설치 시(빌트인 냉장고 옵션 미선택시) 주방가구보다 냉장고 전면이 돌출될 수 있음.
- 침실에 분전함, 통신단자함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위치는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창호의 설치 유무 및 창호크기, 또는 창위치는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반유선전화를 가입하지 않고 인터넷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홈네트워크기기(월패드등)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음.
- 실외기실 및 대피소 내부에는 물건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 59m²-84m² 주택형의 에어컨 냉매배관과 콘센트는 거실과 안방 벽면만 설치되며, 옵션 선택으로 천장형에어컨이 설치될 경우 에어컨냉매배관(거실, 안방) 및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음.

- 시스템에어컨 음선 미선택시 안방용 에어컨 냉매박스 내부에는 냉매배관 및 벽걸이용 콘센트(1구형)가 설치되며, 별도의 마감카바 없이 도배로 마감됨. (위치 스티커 부착됨)
- 시스템에어컨 음선 미선택시 거실용 에어컨 냉매박스는 거실 아트-월 벽면에 플라스틱 마감카바로 설치될 예정이며, 냉매박스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음.
- 세대 내 실내환기는 기계환기방식으로 디퓨저는 거실과 각 침실 천정에 시공되며 작품 중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공사시 콩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콩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될 수 있음.

■ 창호

- 외부 창호 색상,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 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외부 입면 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 실제 시공시 협력업체 계약관계 및 세대한기장치의 설치(환기덕트)로 인해 형태, 규격, 개폐방향, 손잡이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세대 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 견본주택 및 카다로그상의 단위세대와 대칭형으로 시공되는 세대가 있으나 계약전 해당 평면 및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타입별 동호수 위치는 분양 카탈로그를 참고)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사유와 관련하여 설치완료 후 이동이 불가함.
- 평형별로 제공 품목 및 선형형 제공 여부가 상이하오니 카탈로그 및 모형을 참조하시기 바람.
- 각 평형별 유상옵션과 무상옵션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주동 저층부 차별화마감 적용시, 별도마감적용부위의 세대 및 공용부 창호의 폭과 높이와 색상이 마감을 위해 필요한 치수만큼 축소 또는 외부마감이 노출될 수 있음.
- 에어컨매립배관이 설치될 경우 확장여부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건립세대 외의 타입은 모형들과 카탈로그를 참조해야 함.

■ 마감

-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가 사용될 경우, 자재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자체의 품질상 하자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함.(미사용시 해당 없음)
- 천연석이 사용될 경우,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며, 자연적 패턴과 색상, 베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다소 상이 할 수 있음.(미사용시 해당 없음)
- 인조강화대리석(현관디딤판, 화장대상판, 욕실뒷선반등)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음. 재료의 접합연결부가 발생하며,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음.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함.
- 주방상판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판 크기와 형태에 따라 나누어 제작/설치되는 관계로 본 시공시 연결부위가 발생(세대별로 위치가 다를 수 있음.)되며, 제품 특성상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음.
- 욕실 및 세탁실 문턱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음.(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음)
- 세대내부 욕실 및 발코니의 바닥단자는 바닥구배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내부 설치되는 자재 및 제품(주방 및 일반가구, 시스템선반, 현관방화문, 제작품, 마루, 타일 등)는 본 공사시 업체선정 결과에 따라 제조사 및 시공사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재 특성상 또는 제조사 및 제조시기 등의 차이로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외벽 및 세대간벽 등 단열설치부위의 결로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음.
- 세대 아트월 부위에 벽걸이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직접 경량벽체에 고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함.
- 비화장 및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옆세대(발코니화장) 단열로 인하여 발코니의 면적의 감소 및 일부벽체가 돌출될 수 있음.
- 거실 우물 천장은 스프링클러 배관 설치로 인해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 거실 아트월은 오픈줄눈으로 시공 됨.
- 우물천정과 결례받이는 본공사시 하자발생 방지를 위해 PVC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 될 수 있음.
- 가구류(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욕실거울, 현관거울 등)의 벽, 바닥, 천장등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마감내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내 천정몰딩은 하자예방 및 시공성향상을 위해 도배홀이 설치되며 견본주택과 디자인이 상이할 수 있음.
- 단지내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시공시기의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동등이상의 다른 자재(타사자재 포함)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화장 관련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화장은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발코니 화장 금액은 아파트 분양공급금액과는 별도이며, 발코니 화장형 세대는 반드시 추가 부담하여야 함.(주택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화장 계약금 납부)
- 발코니 화장 선택 시 실별·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화장을 전제로 산정된 금액임.
- 발코니 화장 금액은 화장으로 인해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항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이며, 발코니내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발코니 화장 금액은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추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발코니 화장은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며, 자재발주 및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화장 계약 및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 시작 이후 해지하면 위약금과 원상회복비용(실손해액)을 부담하여야 함.
- 발코니 화장시 마감자재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화장시 마감자재 등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화장 시공 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
- 발코니 화장 면적은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화장을 개별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등의 동의 필요)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의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리 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 발코니 화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서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등을 초래하여 탑입주자에게 불편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함.
- 발코니 화장을 개별 시공할 경우 개별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가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다면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호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음.
- 발코니 화장시 화장 부분의 외부 새시는 PVC재질 등으로 설치되며 창호 사양(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자의 사용관리상 하자 및 임의 개보수를 제외한 시공상 또는 제품의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 발코니 외부창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발코니 화장시 화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화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화장 계약시 비화장으로 남아 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화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음.(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 발생시 하자보수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의 단자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견본주택 및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외부 새시가 설치된 발코니 외벽에는 단열재 및 마감재가 설치되며(대피소 및 실외기실은 제외) 설치 부위와 재질은 발코니별, 주택형별로 다를 수 있음. 또한, 실제 발코니 면적보다 실사용 면적은 줄어들어 시공됨.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상하부 세대 포함)가 기본형(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가구길이 감소, 우물천장 크기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인접한 확장형 세대와 면하는 발코니에 단열재 추가 설치로 인하여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음.
- 기본형(비확장) 세대는 상부세대가 확장일 경우 발코니 천장에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천장 마감,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 될 수 있음.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정에 덕트 및 연도,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음.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입주 전 외부새시 설치 후 입주하셔야 발코니 우수 침투에 대한 문제가 없으며 외부새시 미설치로 인한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며, 기본형 세대 선택시 확장형 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할 수 있고, 확장형 세대와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마감재, 제공품목 등)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시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코니 외부 창호류, 세대 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발코니 확장공사 및 추가선택품목을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금 납부계좌와 선택 옵션금 납부계좌 및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입금시 유의하시기 바람.

▣ 학교배치 관련 유의사항

- 본 아파트 입주시점에 학교배정(초등학교는 용인초등학교 예정, 중학생은 용인1중학교 내 신설 학교가 설립되거나, 미설립될 경우 학생배치시설의 추가확보 후 배정 예정) 등 교육정책은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학생배치여건 변화, 급당인원 변경 등에 따라 학생배치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통학거리와 관련하여서는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 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 있음.

■ 사이버 모델하우스 : <http://www.용인드마크데시昂.com>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515-1번지 (1577-0830)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